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137
------------------	-----

제출년월일 : 2004. 12. 17 .
제 안 자 : 우강호 의원외 인

1. 제 안 이유

-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창군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므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을 통하여 국민식생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

2. 주 요 골자

- 가. 학교급식지원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 나. 학교급식의 지원의 원칙,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 다. 학교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 라. 지원대상자의 지원교부결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사용의무에 관한 사항, 지원금의 정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집행부 의견 : 따로붙임
- 다. 예산조치 : 향후조치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내(이하 “군내”라 한다)의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평창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을 통한 국민식생활 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평창군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내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창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의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지출부담 완화
3. 학교급식시설 설비의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강화
4.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 관리능력 배양
5.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및 성장의 균등한 기회보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생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기농업을 목표로 한 우리농업 생산물과 이에 준하는 수산물, 축산물 및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곡물·야채·과일·육류·어패류 등 신선식품, 곡물이나 신선식품을 이용한 가공식품, 원료농산물 등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된 음식의 원료를 말한다.

5. “직영급식”이라 함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강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6. “위탁급식”이라 함은 급식 개시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 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7.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 및 해당학교 유아교육 기관을 말한다.

제4조(학교급식지원의 원칙) 군수는 학교급식지원과 관련 다음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농·수·축산물, 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농·수·축산물 등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2.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3. 학교급식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
4. 학부모의 참여의 제도화
5. 학교급식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등 인권에 관한 사항의 철저한 관리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부족한 식재료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급식시설, 설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3.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학기 중 부담하는 학교급식 경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경우는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 또는 학부모 부담액만을 지원한다.

1. 관내 학교급식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2. 관내 학교급식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3. 관내 학교급식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제7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시행계획
5. 급식시설 및 식재료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6. 급식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내역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은 제8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2. 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부서장
3. 군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임원
5. 농민단체 임원
6. 교원단체 임원 등

- ③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 호선하고 간사 1인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보고 및 확인) ① 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교육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關係法令 拔萃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 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② 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①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급식경비부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8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